



## 도매상 및 배급사를 위한 향첨가 담배 및 전자담배 안내

2024년 6월 뉴욕 보건부는 뉴욕 행정 법규 17-715조에 따라 뉴욕시 규칙을 개정하여 뉴욕시에 소재하는 도매상 및 배급사가 시 외에 위치한 사업체에 향첨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. 이제, 도매상과 배급사는 향첨가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액상을 시 내외이든 어느 사업체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담배 바를 제외한 어느 사업체에게 향첨가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. 개정된 규칙을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.

### § 28-02 향첨가 담배 상품, 향첨가 전자담배, 향첨가 전자담배 액상 판매 또는 판매 제의 제한.

- (a) 오직 다음 법인만 향첨가 담배 상품을 판매 또는 판매를 제의할 수 있습니다.
  - (1) 담배 바
  - (2) 담배 도매상, 그러나 오직 판매 또는 판매 제의는 담배 바로 제한됩니다.
- (b) 향첨가 전자담배 및 향첨가 전자담배 액상 판매는 금지됩니다.
- (c) 담배 상품 중 멘톨, 민트, 윈터그린 외의 특정 향을 나타내지 않는 상품은 행정 법규 § 17-715에 따라 판매가 제한되지 않으며, 해당 판매가 담배 바 대상 또는 담배 바에서 이루어지는지와 무관하게 담배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가된 모든 소매 거래상 또는 도매 거래상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.

도매상 및 배급사는 소매업체들이 해당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. 준수는 반송되는 배송품을 최소화하고 위반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므로 도매상 및 배급사뿐만 아니라 소매업체들을 돕습니다. 해당 새로운 규칙은 집행을 명확히 하고 간소화합니다.

도매상과 배급사는 뉴욕시 및 뉴욕주 법을 따라야 하는 책임을 지닙니다. 향첨가 상품 판매, 판매 제의, 판매 의도 또는 판매 제의로 소지하는 경우 뉴욕시 행정 법규 17-715조의 위반으로 벌금을 포함한 집행 조치가 내려집니다.

### 추가 정보 안내:

- 뉴욕시에서 무엇이 향첨가 담배 상품 또는 전자담배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[on.nyc.gov/prohibited-smoking-products](https://on.nyc.gov/prohibited-smoking-products)를 방문하십시오.
- 기타 뉴욕시 담배 및 전자담배 법은 [nyc.gov/health](https://nyc.gov/health)를 방문하여 [tobacco laws](#)(담배법)을 검색하시거나 **311**에 전화하여 담배 또는 전자담배 소매업체라고 말씀하십시오